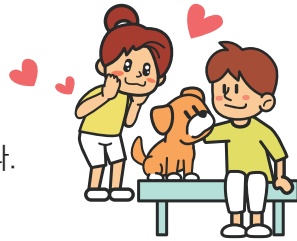




우리 집 사랑둥이, 반려동물 등록하셨나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방법은?

동물등록은 이렇게!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접수하세요

변경신고는 이렇게!

- 소유자 변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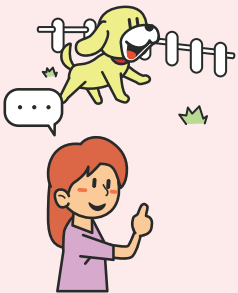
시·군·구청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동물등록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거나, 동물의 유실·사망시에는?

시·군·구청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동물등록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변경신고란?



10일 이내 신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30일 이내 신고

소유자 또는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등록 동물이 사망했을 때, 무선식별장치 또는 동물인식표 등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



함께하면 더욱 행복한 펫티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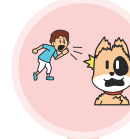
반려인의 법적 의무



비반려인의 매너



..... 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에 반드시 동의 구하기!



..... 큰소리로 갑자기 다가가면 반려동물도 깜짝!
반려동물을 자극하는 과잉행동, 자제하기!



..... 노란리본을 발견하면 적당한 거리 유지!
..... 노란리본을 한 강아지는 예민하거나 훈련 중인 강아지라는 표시예요~ **이 작은 배려의 표시를 꼭 기억해주세요.**